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 배정호 외 6명 소유물건(2024타경3004)

의뢰인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금숙

감정서번호 : 250115-1-007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원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43-724-2500

FAX. 043-724-2501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신 수 병

(인)

감정평가액	사역일천이백이십만이천원정 (₩412,202,000.-)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금숙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총주지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배정호 외 6명 (2024타경3004)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1.17	2025.01.15 ~2025.01.17	2025.01.21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5,447	토지	5,447	-	410,042,000
	제시외	1식	제시외	1식	-	2,160,000
합계					₩412,20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 평가개요

1. 대상물건 개요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소재 "센테리움CC"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토지)으로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입니다.

2.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에 의거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및 기준시점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 일인 2025.01.17. 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2025.01.15. ~ 2025.01.17. 이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목록과 현황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등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4.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토지로 구성된 부동산으로서, 물건의 특성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 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3방식(비교방식, 원가방식 및 수익방식) 중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 1)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 2)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 3)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 4)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토지평가

본건 토지의 평가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내 최근 매매사례 중 대상과 비교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여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5. 기타사항

1.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 등에 의거하였습니다.
2. 본건의 지적 및 경계 등은 지적공부 및 목측에 의거 개략적으로 조사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정확한 지적 및 경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의 방법으로 재확인 이 요망됩니다
3. 본건 토지중 기호(4)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이나 다른용도지역의 면적 등이 전체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주된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하되,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기타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4. 본건(기호1~3)의 접도구역 저축부분은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였으며, 기호(2)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별도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 대상부동산의 개황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토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개별공시지가 (2024년, 원/㎡)
	1	신호리 613-3	답	793	계획관리	답	31,300
	2	신호리 614-4	답	334	계획관리	답	30,200
	3	신호리 614-8	답	151	계획관리	답	30,200
	4	신호리 622	답	1,825	계획관리 보전관리	전	21,300
	5	신호리 623	답	2,344	계획관리	답	22,200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토지가격 산출

1. 공시지가기준법

1) 비교표준지 선정

본건 인근지역 등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본건과 용도지역,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 가능성이 높은 (2024.01.01.자 공시)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형상 지세	도로 교통	공시지가 (원/㎡)
A	신호리 607-1	답	1,851.0	계획관리	전	부정형 완경사	세로(불)	24,900

2) 지가변동률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기 간	변동률	비 고
충청북도 충주시 계획관리 2024.01.01~ 2025.01.17	1.02018	2024.01.01 ~ 2024.11.30 : 1.842 2024.11.01 ~ 2024.11.30 : 0.108 $(1 + 0.01842) * (1 + 0.00108 * 48/30)$ ≈ 1.02018

3)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 'A' 의 인근에 소재하는바,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

4) 개별요인 비교

① 개별요인 비교항목

개 별 요 인 (농경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대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 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② 개별요인 비교

토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계
1	-	1.20	1.00	1.00	0.98	1.00	1.176
2	-	1.20	1.00	1.00	0.80	1.00	0.960
3	-	1.20	1.00	0.95	0.90	1.00	1.026
4	-	1.00	1.00	1.00	0.94	1.00	0.940
5	-	0.95	1.00	1.00	1.00	1.00	0.950

기호1,2: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우세하나 행정적조건(도로구역 저촉)이 열세합니다

기호3: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우세하나 획지조건(형상 등) 및 행정적조건(도로구역저촉)이 열세합니다

기호4: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등이 유사하나 행정적조건(일부 보전관리지역 $0.23 \times 0.76 + 0.77 = 0.9448$)이 열세합니다

기호5: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이 열세합니다

5) 그 밖의 요인

①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 [2003다 3820(2004. 05.14 선고), 2002두 5054(2003.07.25.선고)] (99두7968),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 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밖의 요인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평가 대상 토지가 속하고 있는 인근지역 내 평가선례 등을 참작하여 그밖의 요인으로 보정하고자 합니다.

② 최근 3년간 본건 개별 공시지가 변동추이(단위: 원/m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기호 1	33,000	30,800	31,300
기호 2	31,700	29,600	30,200
기호 3	31,700	29,600	30,200
기호 4	21,800	20,600	21,300
기호 5	22,600	21,400	22,200

③ 인근 지가수준

본건 인근 유사형 토지의 지가수준은 : @50,000~100,000 원/m² 수준입니다.

④ 평가선례[출처: 감정평가사협회 정보]

구분	소재지	지 목	용도 지역	기준시점 거래시점	목 적	토지단가 (원/m ²)	비 고
가	신호리 40*	전	계획관리	2024.09.03	기타	65,500	-
나	신호리 724-1*	전	계획관리	2024.09.03	기타	111,500	-
다	신호리 721-*	전	계획관리	2024.01.02	담보	53,000	-
라	신호리 726-*	과수원	계획관리	2024.11.28	담보	106,000	-
마	신호리 617-*	전	계획관리	2018.02.23	시가참고	62,000	선정

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1) 사례선정 :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비교가능성이 있는 평가사례 기호 '마' 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시점수정

기 간	변 동 률	비 고		
충청북도 충주시 계획관리 2018.02.23~ 2025.01.17	1.17462	2018.02.01 ~ 2018.02.28 : 0.261		
		2018.03.01 ~ 2018.03.31 : 0.279		
		2018.04.01 ~ 2018.04.30 : 0.238		
		2018.05.01 ~ 2018.05.31 : 0.290		
		2018.06.01 ~ 2018.06.30 : 0.209		
		2018.07.01 ~ 2018.07.31 : 0.219		
		2018.08.01 ~ 2018.08.31 : 0.171		
		2018.09.01 ~ 2018.09.30 : 0.319		
		2018.10.01 ~ 2018.10.31 : 0.376		
		2018.11.01 ~ 2018.11.30 : 0.348		
		2018.12.01 ~ 2018.12.31 : 0.326		
		2019.01.01 ~ 2019.12.31 : 2.239		
		2020.01.01 ~ 2020.12.31 : 2.087		
		2021.01.01 ~ 2021.12.31 : 3.167		
		2022.01.01 ~ 2022.12.31 : 2.175		
		2023.01.01 ~ 2023.12.31 : 1.735		
		2024.01.01 ~ 2024.11.30 : 1.842		
		2024.11.01 ~ 2024.11.30 : 0.108		
				$ \begin{aligned} & (1 + 0.00261 * 6/28) * (1 + 0.00279) \\ & * (1 + 0.00238) * (1 + 0.00290) * (1 \\ & + 0.00209) * (1 + 0.00219) * (1 + \\ & 0.00171) * (1 + 0.00319) * (1 + \\ & 0.00376) * (1 + 0.00348) * (1 + \\ & 0.00326) * (1 + 0.02239) * (1 + \\ & 0.02087) * (1 + 0.03167) * (1 + \\ & 0.02175) * (1 + 0.01735) * (1 + \\ & 0.01842) * (1 + 0.00108 * 48/30) \\ & \approx 1.17462 \end{aligned}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지역요인 비교: 사례 기호 '마' 와 비교표준지 'A'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합니다.(1.00)

*4) 개별요인비교

표준지	사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A	마	-	1.05	1.10	1.00	1.00	1.00	1.050
표준지는 평가사례(마)대비 접근조건(도로의 상태)우세합니다								

*5)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격

표준지	평가선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가격 (원/㎡)
	기호	가격(원/㎡)				
A	마	62,000	1.17462	1.00	1.050	76,468

*6)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가격

표준지	공시기준일	비교표준지 가격(원/㎡)	시점수정	산출가격(원/㎡)
A	2024.01.01	24,900	1.02018	25,402

*7)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본건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토지의 적정 가격수준, 본건의 이용상황, 평가선례,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의 거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표준지	사례기준 비교표준지 가격 (A)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가격 (B)	격차율 ((A)/(B))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A	76,468	25,402	3.0103	3.01

6)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의 결정

연번	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²)	결정단가 (원/m ²)
	기호	공시지가						
1	A	24,900	1.02018	1.00	1.176	3.01	89,919	90,000
2	A	24,900	1.02018	1.00	0.960	3.01	73,403	73,000
3	A	24,900	1.02018	1.00	1.026	3.01	78,449	78,000
4	A	24,900	1.02018	1.00	0.940	3.01	71,874	72,000
5	A	24,900	1.02018	1.00	0.950	3.01	72,638	73,000

2.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 선정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 물적, 위치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다음의 거래사례(사3)를 선정하였습니다.

* 거래사례[출처: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기준시점 거래시점	목적	토지단가 (원/m ²)	비고
사1	신호리 560-*	전	계획관리	2023.09.26	실거래	58,263	-
사2	신호리 610-3*	전	계획관리	2023.04.12	실거래	75,609	-
사3	신호리 587-*	답	계획관리	2022.08.12	실거래	90,233	선정
사4	신호리 610-*	전	계획관리	2021.05.14	실거래	75,757	-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선정된 사례는 인근 지가수준 등을 검토할 때 특별한 사정은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1.00)

3) 지가변동률

기 간	변동률	비 고
충청북도 충주시 계획관리 2022.08.12~ 2025.01.17	1.04215	2022.08.01 ~ 2022.08.31 : 0.115 2022.09.01 ~ 2022.09.30 : 0.158 2022.10.01 ~ 2022.10.31 : 0.101 2022.11.01 ~ 2022.11.30 : 0.057 2022.12.01 ~ 2022.12.31 : 0.021 2023.01.01 ~ 2023.12.31 : 1.735 2024.01.01 ~ 2024.11.30 : 1.842 2024.11.01 ~ 2024.11.30 : 0.108 $(1 + 0.00115 * 20/31) * (1 + 0.00158) * (1$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0.00101) * (1 + 0.00057) * (1 + 0.00021)$ $* (1 + 0.01735) * (1 + 0.01842) * (1 +$ $0.00108 * 48/30)$ ≈ 1.04215
--	--	---

4)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거래사례 인근에 소재하는바,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

5) 개별요인비교

기 호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 계
1	1.00	1.00	1.00	0.98	1.00	0.980
2	1.00	1.00	1.00	0.80	1.00	0.800
3	1.00	1.00	0.98	0.90	1.00	0.882
4	0.85	1.00	1.00	0.94	1.00	0.799
5	0.80	1.00	1.00	1.00	1.00	0.800

기호1,2: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우세하나 행정적조건(도로구역저축)이 열세합니다

기호3: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우세하나 획지조건(형상등) 및 행정적조건(도로구역저축)이 열세합니다

기호4: 행정적조건(일부보전관리지역 $0.23*0.76+0.77=0.9448$)이 열세합니다

기호5: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이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격의 결정

기호	거래사례 토지단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90,233	1.00	1.04215	1.00	0.980	92,156	92,000
2	90,233	1.00	1.04215	1.00	0.800	75,229	75,000
3	90,233	1.00	1.04215	1.00	0.882	82,940	83,000
4	90,233	1.00	1.04215	1.00	0.799	75,135	75,000
5	90,233	1.00	1.04215	1.00	0.800	75,229	75,000

3. 토지가격 결정

1) 산정된 시산가액 (단위: 원/㎡)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1	90,000	92,000
기호 2	73,000	75,000
기호 3	78,000	83,000
기호 4	72,000	75,000
기호 5	73,000	75,000

2) 검토 및 토지가격 결정

산정된 시산가액은 위와 같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는 바, 공시지가기준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토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Ⅲ. 감정평가액 결정

1. 감정평가액

구 분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 고	
토지	기호 1	793	90,000	71,370,000	전
	기호 2	334	73,000	24,382,000	전
	기호 3	151	78,000	11,778,000	전
	기호 4	1,825	72,000	131,400,000	전
	기호 5	2,344	73,000	171,112,000	전
제시외	수목	1식	-	2,160,000	소나무
합 계			412,202,000		

2. 결정의견

상기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등의 가격자료와 평가물로서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단 가	금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613-3	답	계획관리지역	793	793	90,000	71,370,000	현황 "전"
2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614-4	답	계획관리지역	334	334	73,000	24,382,000	현황 "전"
3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614-8	답	계획관리지역	151	151	78,000	11,778,000	현황 "전"
4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622	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825	1,825	72,000	131,400,000	
5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623	답	계획관리지역	2,344	2,344	73,000	171,112,000	현황 "전"
(ㄱ)	[제시외 수목]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614-4 위지상	수목	소나무 약18주	1식	1식	-	2,160,000	
합 계								₩412,202,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소재 "센테리움CC"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으로 간선도로(솔고개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5):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기호2:수목식재)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5):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도로로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도로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2,3,5)는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되고있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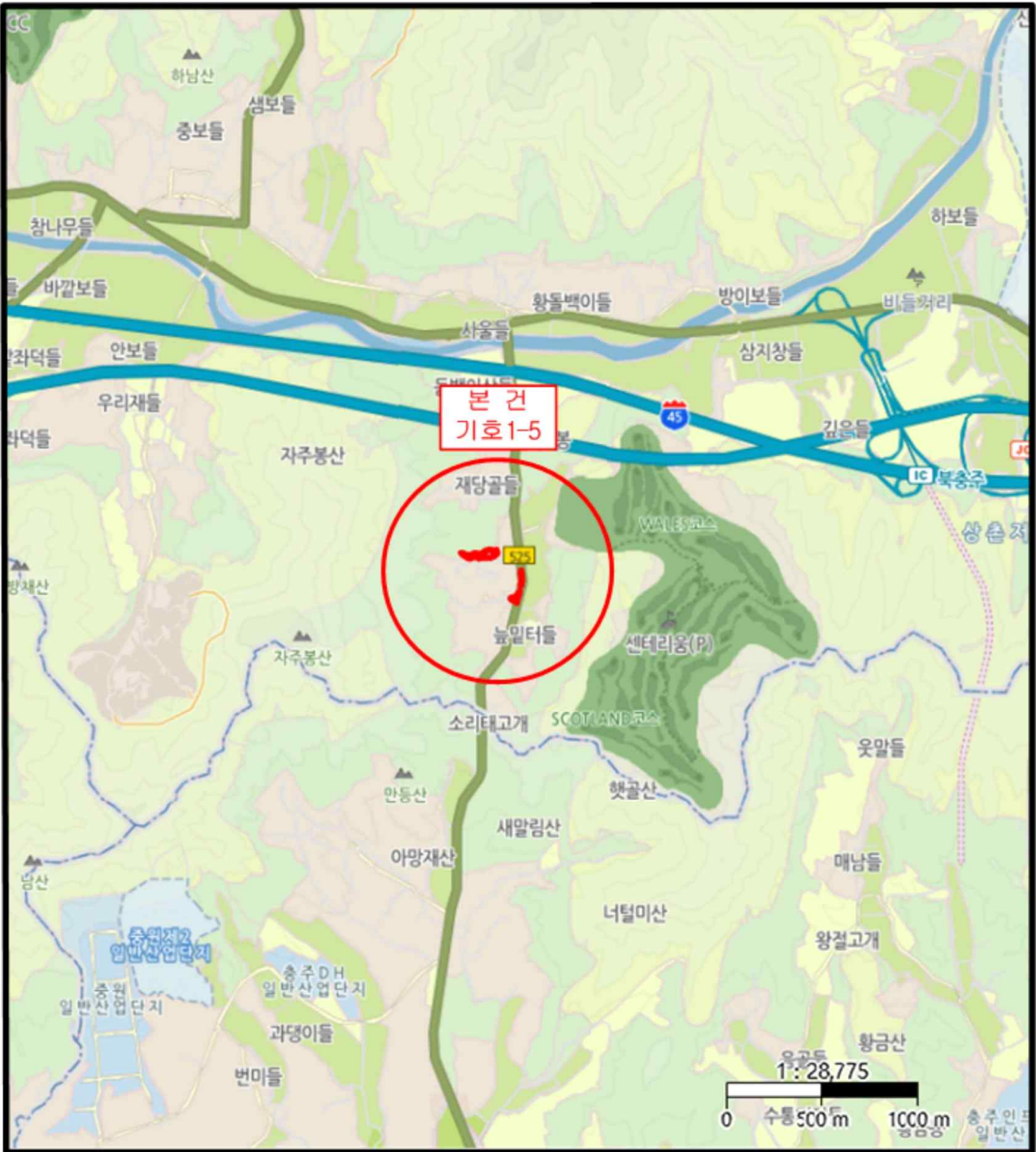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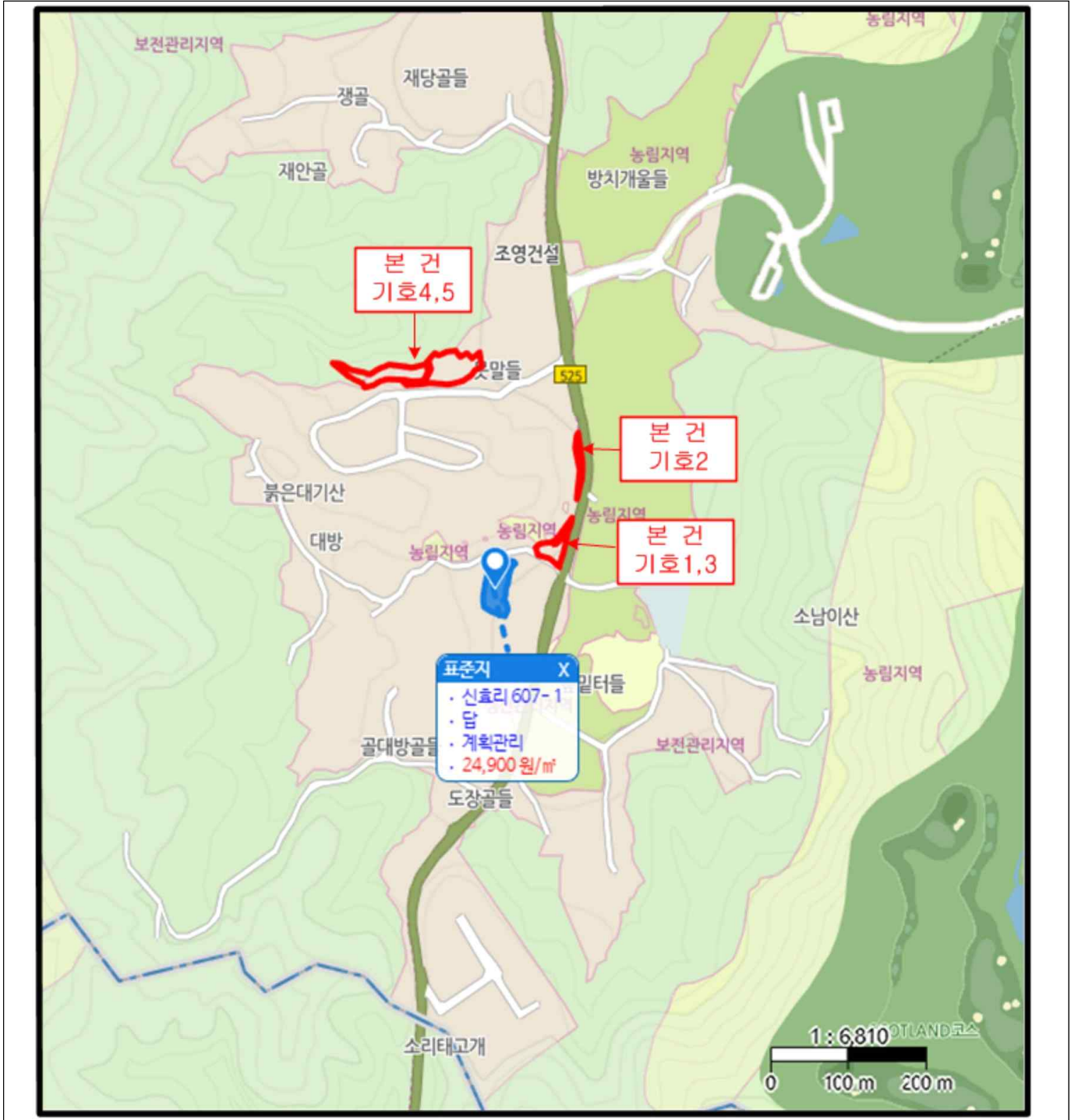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613-3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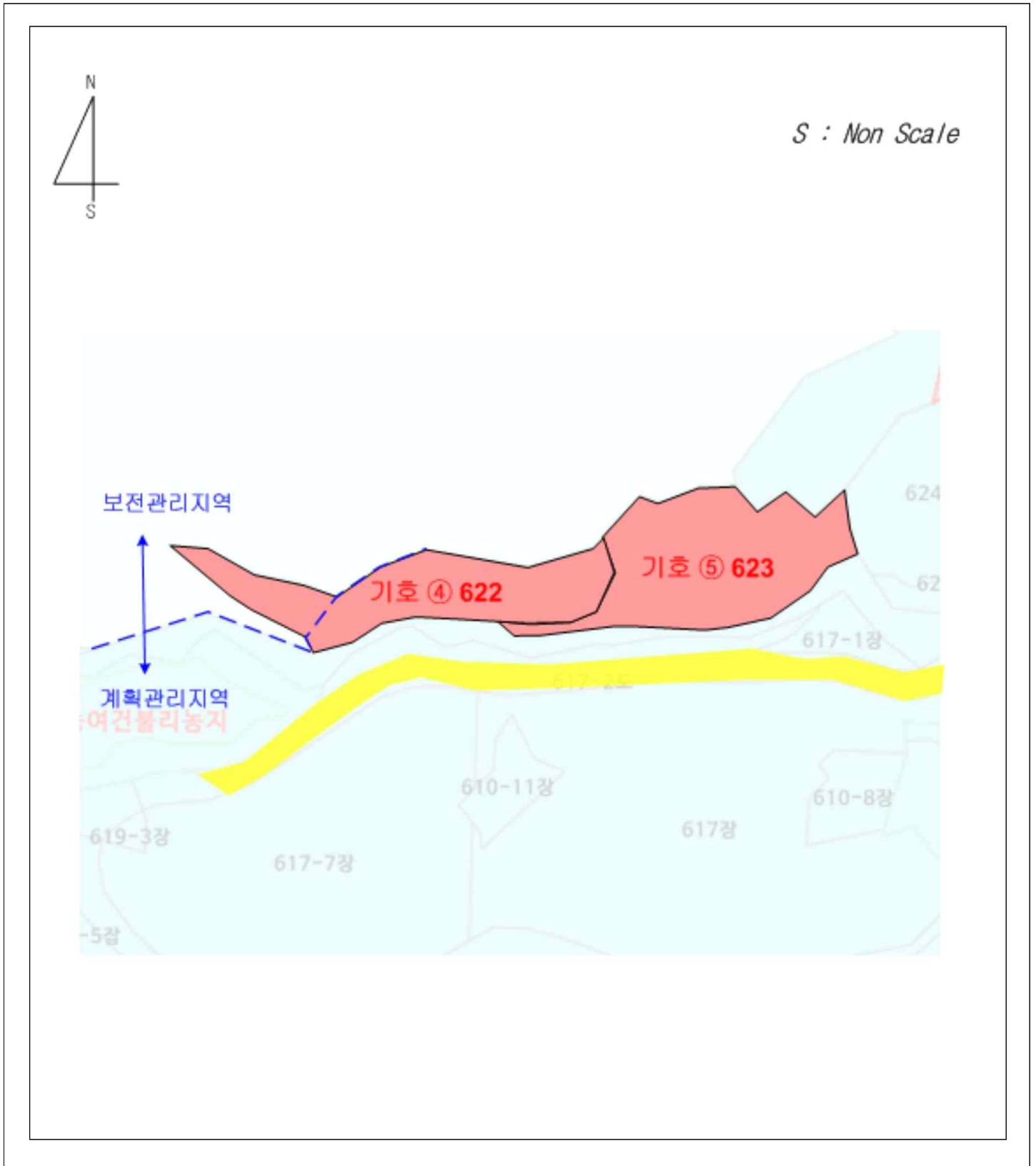
위 치 도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613-3 외



지 적 도



지 적 도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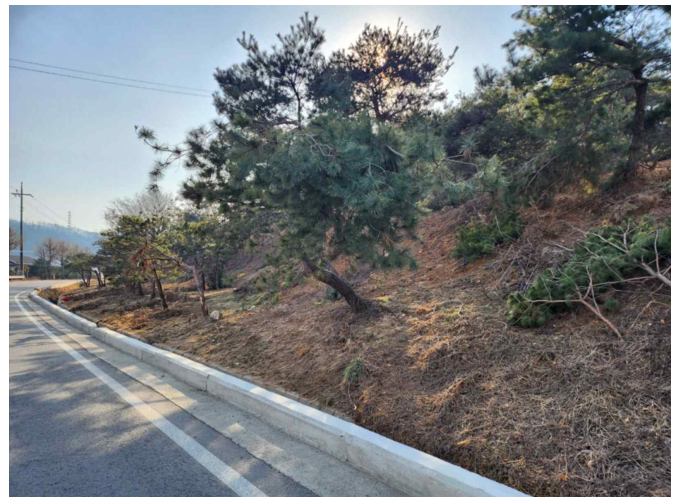
기호 1



기호 1, 3



기호 2



기호 2

사 진 용 지



기호 4(중간부분)



기호 4(서측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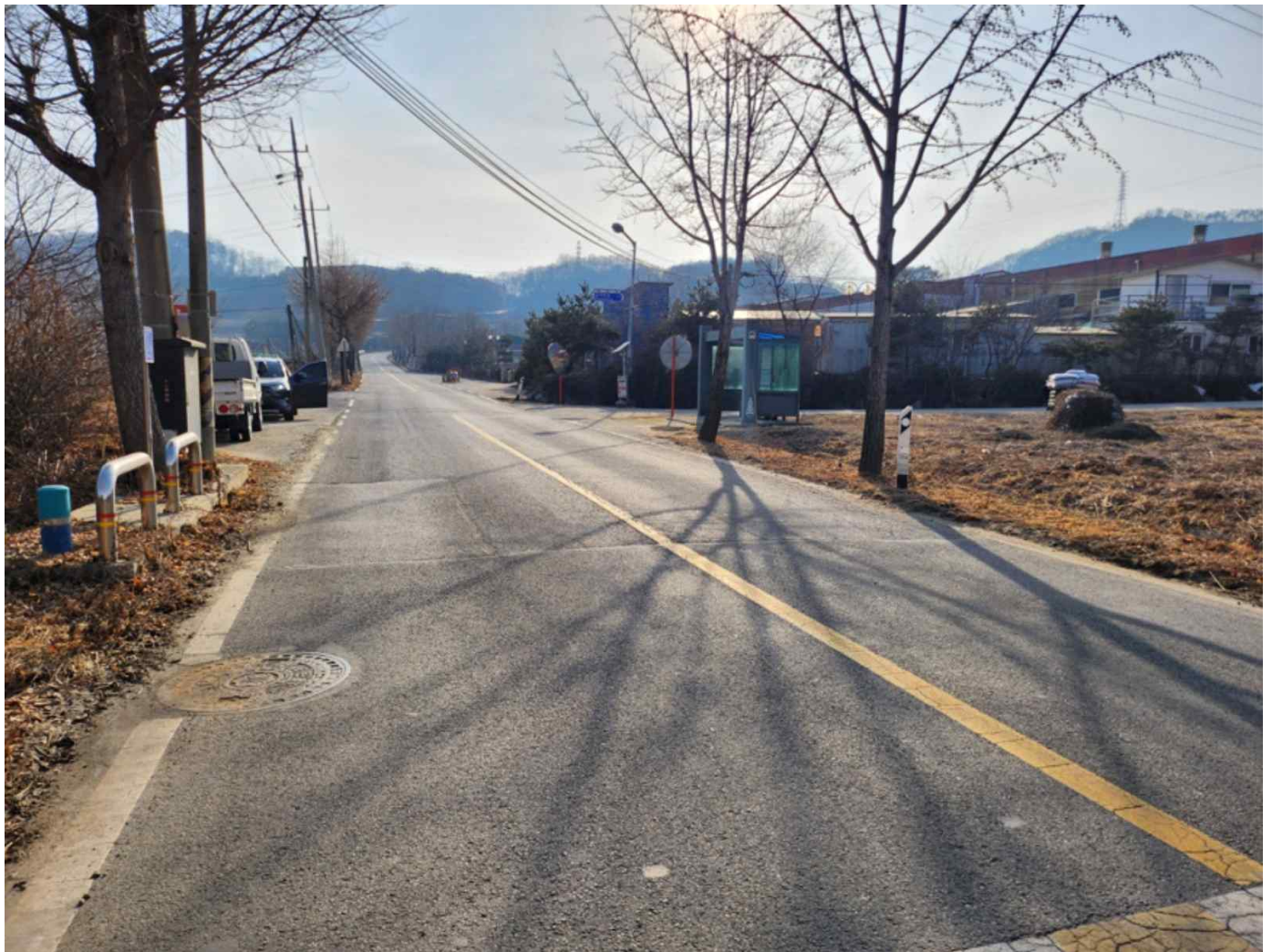


기호 5



기호 5(동측부분)

사 진 용 지



기호 1~3 동측도로